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1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경개요

1) 추경예산 : 1,450,0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39,950,657천원 (기 출연금 38,500,657천원)으로
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타당성 : 100,000천원
- 예술로 동행 : 300,000천원
- 무용단 신작쇼케이스 : 80,000천원
- 뮤지컬 신규작품준비금 : 50,000천원
- 기획공연 사전준비금 : 120,000천원
- 전시사업 사전준비금 : 20,000천원
- 비상발전기 교체 : 780,000천원

2) 추경필요성

-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 타당성

-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스발레단 창단에 대해 사회, 경제, 정치적 환경과 이해관계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선행 필수

- 예술로 동행

- 세종문화회관의 연례 계속사업으로,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예술단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
-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상반기 내 협력 자치구 선정, 공연준비 등 추진 필요

- 무용단 신작 쇼케이스

- 공연 사업 특성상 사업이 확정되어야 연출, 작품라이선스 취득 등이 가능
- 사업기간인 11월~12월인 점을 감안, 사전에 연출, 대본 등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므로 상반기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

- 뮤지컬 신규작품준비금

- 시장 조사기간과 라이선스 취득 시기를 고려하면 하반기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촉박한 사업기간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

- 기획공연 사전준비금

- 해외 라이선스 공연 특성상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되어야 프로덕션 진행이 가능하여 하반기 추경으로 진행 시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'23년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

- 전시사업 사전준비금
 - 작품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사업일정, 사업 계획의 확정이 가능하며,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작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에 추경하여 사전 사업 구상을 진행할 필요
- 비상발전기 교체
 - 법정 내용연수 기간 15년을 훌쩍 넘긴 45년째 운영 중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공연 중 정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교체가 시급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 모 : 대지 55,758 m^2 , 건물 63,396 m^2 (지하 3층, 지상 6층)
 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지나 (☎ 2133-2519)